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/전송(02)790-658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50호

시행일자 2024. 4. 22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의사회장,
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881호(2024. 4. 22.)

3. 위와 관련,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우리협회에 송부해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

가. 추진방향 :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

나. 부과금액 : **5만원**(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)

* 대상약제 : 팍스로비드 1명분(5일치), 라게브리오 1명분(5일치), 베클루리주 1명분(중증 5일치, 경증 3일치)

-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

다. 추진체계 : 치료제를 조제·투약하는 의료기관·약국(담당기관)이 환자에게

본인부담금을 징수(수납)하고,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수납한 본인부담금을 공제 후 질병관리청에 반환

○ 시행일 : 2024. 5. 1. 0시 이후

- 붙임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
2.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부.
3.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 1부.
4. (참고자료) 코로나19+위기단계+경계에서+관심으로+하향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